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일부 국가 및 수도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을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한민국대표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5명(3등급 또는 4등급 5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외교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정책공공외교1과와 정책공공외교2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외교총괄과와 유네스코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의 연구부장 2명 중 1명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외교전략기획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유라시아2과와 아프리카2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1명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3호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21조제7항제16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정책공공외교1과·정책공공외교2과”를 “정책공공외교과·디지털공공외교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공공외교1과장”을 “정책공공외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공공외교2과장”을 “디지털공공외교과장”으로 한다.

6의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제27조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5명(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명,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명,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할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중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부장 2명”을 “외교전략기획관,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부장 1명”으로 한다.

제38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시정원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한시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6과 같다.

별표 1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67”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38”을 “241”로 하며, 사서주사보 “8”을 “9”로, 행정서기보 “27”을 “29”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21”을 “722”로 하며,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서기관·행정사무관 “27”을 “26”으로 하고, 그 다음에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비서(5급 상당) 1”을 신설하며,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8”을 “9”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를 삭제하며,

부 칙

“일반직 계 3”을 삭제하고, “사서주사보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2”를 삭제하고, “외무공무원 계 1”을 삭제하며,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76”을 “97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72”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238”을 “241”로 하고, 사서주사보 “8”을 “9”로, 행정서기보 “27”을 “29”로 하며, 외무공무원 계 “726”을 “722”로 하고,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서기관·행정사무원 “27”을 “26”으로 하며, 그 다음에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서기관·행정사무원 또는 별정직 비서(5급 상당) 1”을 신설하고,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2”를 “31”로,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27”을 “125”로,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10”을 “9”로 하며, 별표 1의2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을 삭제하며, “사서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2”를 삭제하며, “외무공무원 계 1”을 삭제하고,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9) 및 10) 평가기간란 중 “2022년 9월30일”을 각각 “2024년 9월 30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외교부령 제7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행	개 정 안
---	-------

현행	개정안
제19조(유럽국) ① ~ ⑥ (생략)	제19조(유럽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그리스·독일·루마니아·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몬테네그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북마케도니아·불가리아·사이프러스·세르비아·스위스·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오스트리아·체코·코소보·크로아티아·터키·폴란드·헝가리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 ----- ----- ----- ----- ----- ----- ----- ----- ----- -- <u>튀르키예</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u>터키</u>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3. ----- <u>튀르키예</u>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⑧·⑨ (생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제기구국) ① ~ ⑥ (생략)	제21조(국제기구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유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멕시코·인도네시아·대한민국· <u>터키</u> ·오스트레일리아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MI KTA)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6. ----- ----- <u>튀르키예</u> ----- ----- -----
17.·18. (생 략)	17.·18. (현행과 같음)
⑧ 삭 제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① (생 략)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문화외교국에 공공외교총괄과·유네스코과·문화교류협력과· <u>정책공공외교1과</u> · <u>정책공공외교2과</u> 를 둔다.	② ----- ----- <u>정책공공외교과</u> · <u>디지털공공외교과</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6의3. (생 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의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u>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⑤ 유네스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1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u>	<u><삭 제></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u>정책공공외교1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u>정책공공외교과장</u>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⑧ <u>정책공공외교2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u>디지털공공외교과장</u>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① ~ ⑦ (생 략)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미합중국·캐나다· <u>터키</u>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총괄·조정	1. ----- <u>튀르키예</u> ----- ----- -----
2. 미합중국·캐나다· <u>터키</u>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2. ----- <u>튀르키예</u> ----- ----- -----
3. 미합중국·캐나다· <u>터키</u>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3. ----- <u>튀르키예</u> ----- ----- -----

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기후변화대사, 부대변인, 감사 관, <u>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부장 2명을 말한다.</u> ②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외교부령 제70호 외교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 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명,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u>	----- ----- -- 외교전략기획관, 국립외교원 의 교수부장 및 연구부장 1명-- -----.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6장 한시정원</u> <u>제39조(한시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 일까지 외교부에 두는 한시정원 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6과 같 다.</u> 외교부령 제70호 외교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u><삭제></u>	<u>공무원 2명, 3등급·4등급 외교 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 사보 2명)은 2022년 7월 31까지 존속한다.</u>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원은 제외한다)	967	<삭 제>	-967
·	·	·	
·	·	·	
일반직 계	238	241	+3
·	·	·	
·	·	·	
사서주사보	8	9	+1
·	·	·	
·	·	·	
행정서기보	27	29	+2
·	·	·	
·	·	·	
외무공무원 계	721	722	+1
·	·	·	
·	·	·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서기관·행정사무관	27	26	-1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비서(5급 상당)	<신 설>	1	+1
·	·	·	
·	·	·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8	9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	<삭 제>	-4
일반직 계	3	<삭 제>	-3
사서주사보	1	<삭 제>	-1
행정서기보	2	<삭 제>	-2
외무공무원 계	1	<삭 제>	-1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1	<삭 제>	-1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76</u>	<u>971</u>	-5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원은 제외한다)	<u>972</u>	<삭 제>	-972
·	·	·	
·	·	·	
일반직 계	<u>238</u>	<u>241</u>	+3
·	·	·	
·	·	·	
사서주사보	<u>8</u>	<u>9</u>	+1
·	·	·	
·	·	·	
행정서기보	<u>27</u>	<u>29</u>	+2
·	·	·	
·	·	·	
외무공무원 계	<u>726</u>	<u>722</u>	-4
·	·	·	
·	·	·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서기관·행정사무관	<u>27</u>	<u>26</u>	-1
5등급·6등급 영사직공무원·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비서(5급 상당)	<신 설>	<u>1</u>	+1
·	·	·	
·	·	·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 공무원	<u>32</u>	<u>31</u>	-1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 공무원	<u>127</u>	<u>125</u>	-2
·	·	·	
·	·	·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u>10</u>	<u>9</u>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u>4</u>	<삭 제>	-4
일반직 계	<u>3</u>	<삭 제>	-3
사서주사보	<u>1</u>	<삭 제>	-1

<u>행정서기보</u>	<u>2</u>	<u><삭 제></u>	-2
<u>외무공무원 계</u>	<u>1</u>	<u><삭 제></u>	-1
<u>3등급·4등급 외교정보</u>			
<u>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u>			
<u>주사보</u>	<u>1</u>	<u><삭 제></u>	-1